

소액수의(용역) 전적제출 안내공고

1. 전적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고 명: 정자동 109-2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나. 기초금액: 금25,696,000원(추정가격 금23,360,000원, 부가가치세 금2,336,000원)
-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라. 용역내용: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운반 및 처리(물량내역서 참조)
- 마. 용역현장: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8, 109-2, 106-3번지 일원
- 바. 공고기간: 2026. 7. 16.(목) ~ 2026. 7. 23.(목)
-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1.(화) 10:00 ~ 2026. 7. 23.(목) 10:00
- 아. 개찰일시: 2026. 7. 23.(목) 11:00
- 자.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 ※ 전산장에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는 하지 않음)
 - 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 현장설명: 생략

2. 전적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 ※ ②, ③호 공통 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단, ②항을 입찰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③항의 자격 충족

- ※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 대표사는 **분담비중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며, 분담이행업체에 대한 지역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1) 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릅니다.
-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식

-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 적용됩니다.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식

-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7. 22.(수)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정하지 못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 마.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 하는 자(부도 등, 3개월 내 계약포기이력자 등)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참가 보증금 납부

전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 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 바.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1팀(☎031-729-7462)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031-729-7053)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6.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 **계약명** 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완료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완료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완료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